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은 그 문화권의 오랜 전통인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악행인가?

-202311428 강호현

좋은 내용에 비해 각주가 부재하여 필자의 글과 타인의 글 사이의 경계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움. 그 외 내용은 발표시 코멘트와 동일함.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은 그 문화권의 오랜 전통인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악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 모두 종교나 그 사회의 풍습 또는 전통에 의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들은 대부분 여성에 대하여 양성 불평등이나 사회적 힘의 불균형 등에 의하여 근대까지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조혼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남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조혼에 대하여 알아보면 조혼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혼인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지는 혼인을 뜻한다. 유엔 인구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전에 결혼한 20-24세 여성의 숫자가 2010년 67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혼 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나라는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에티오피아의 암하라 주의 주민들 중 결혼한 딸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혼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높은 이유가 사회 규범에 순응한다는 이유였다. 에티오피아 문화에선 결혼이 가족 형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 되어 왔으며 조혼 자체가 중매 결혼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기에 젊은 사람들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개인적 의사 결정권은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남아있다.

에티오피아는 주로 농경 사회이기에 새로운 생산 단위의 성립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결혼을 통하여 가정에 들어온 재산에 따라서도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부자집으로 시집을 간 딸들은 안락한 삶을,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간 딸들은 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난한 가족은 가난한 가족과, 부유한 가족은 부유한 가족과 결혼하는 사회적 성격을 띤다.

작자는 이러한 조혼에 대해서 글을 쓰며 조혼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조혼은 어린 아이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의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혼 문제는 에티오피아 뿐만 아니라 인도, 페루,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혼을 하는 어리고 젊은 신부들은 성병이나 출산 합병증, 가사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가족과 부유한 가족의 조혼과 같은 사례를 보면 가난한 가족의 부모가 거액의 돈을 받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 또한 조혼이 폐지

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여자 학생들 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여성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고 느껴졌다.

그 다음으론 여성 할레란 문화적 관습 또는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이다. 이러한 여성 할레는 혼전순결 유지 및 성적욕구 억제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며 중북부 아프리카의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여성할레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할레 시술 과정에서 여아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마취 합병증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기에 여성 할레는 매우 위험하다 한다.

이러한 여성 할레 문화가 나타나는 국가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가 있다. 여성 할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의 많은 종족이 광범위 하게 행하고 있는 시술이다. 세계적으로 1억5천만 명이 여성생식기절단 시술을 당하였으며, 매년 2백만 명의 소녀에게 시술 되고 있다.

그들은 할레 문화를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고 그러한 할레 문화를 통하여 어린 여성들이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존엄성을 보상 받을 뿐 더러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된다 믿는다.

이러한 할레 시술은 일반적으로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며 시술 과정에서 찬물을 붓거나 시술 받는 소녀에게 충격을 가하는 행동만으로 고통을 경감하며 진행한다. 또한 할레 시술은 전문 의료사가 아닌 부족의 토착 주술사들에 의해 시술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녹슨 면도칼, 깨진 유리병, 날카로운 나무조각 등 비위생적인 도구로 시술을 진행하며 시술 이후 약초, 레몬즙 등으로 시술 부위를 소독하기에 매우 감염률이 높다고 한다.

유엔은 1993년 공식적으로 할레를 폭력으로 규정 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케냐, 이집트 등에서도 할레가 폭력이라는 인식 아래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할레는 신체적인 손상 뿐만 아니라 불안, 공포, 굴욕 등의 감정으로 인한 심리적인 손상또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할레 시술의 전후에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 심각성은 더 하다.

작자는 이러한 점에서 여성 할레가 폐지되어야 할 악행이라 생각했다. 그 이유는 할레 시술을 받는 소녀가 시술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시술을 진행하는 것은 소녀에게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술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불운한 운명을 탓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으며, 사망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기능 장애 또는 종양 등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할레 문화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할레가 진행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할레가 전통적인 사회 속에선 성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공포감이 조성되는 환경이 아닌 선물을 주고받는 등 잔치 느낌의 환경에서 진행된다.

이로 인하여 어른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 따위로 받아들여 소녀들이 겪는 고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할레 문화와 같이 명예 살인 또한 문제가 된다.

명예살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요르단, 이집트, 예멘 등 이슬람권 문화에서 자주 일어나며 명예살인은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 간통한 여성 들을 상대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일들을 이유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 국가권에선 이러한 여성들을 명예살인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간다.

하지만 샤리아 즉 이슬람 법에 따르면 간통을 하는 행위가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여성을 쳐다보는 것 또한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명예 살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명예 살인의 관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만약 자녀가 외지에서 정조를 잃었거나 믿고 있던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는 등의 일이 생긴다면 그의 부모나 가족의 신앙심, 무슬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녀를 처벌하는 경우가 명예 살인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명예 살인은 이슬람 국가권에선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행위로 인식하고 살인죄로 처벌 받기보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된 행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사회적 반발 조차 없이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에 외부인이나 법원이 사건에 개입하여 살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 살인 사건이 공론화 되기도 어렵다.

간통에 대하여 이슬람 사회의 남성들이 만약 간통을 확인하고도 부인과 간부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비겁한 행동이라 인식한다. 간통죄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립되지만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저버린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남성은 범죄의 대가를 받는다. 이러한 이슬람 사회를 보았을 때 간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범죄보다 종교적, 문화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통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성이 명예 살인 당하는 경우 피해자를 간통한 남성도 포함 된다. 이 말은 간통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을 시에 여성보다 남성이 즉결적으로 살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명예 살인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버지 혹은 남자형제 등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작자는 명예살인에 대해 알아보며 간통이나 정조 상실 등의 이유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해당 여성을 살해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 방법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간통을 한 여성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옳지만 가족 중 누군가에게 살해 당하고 그 살해한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는 점이 문화적 차이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살인 행위임이 분명하기에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반발이나 이의를 제기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

어떠한 나라의 문화, 풍습, 전통 등을 배려 해야 하며 외부에서 간섭하여 그 문화를 폐지 하거나 개입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다. 하지만 도덕적, 보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혼, 여성 할레, 명예 살인은 폐지되어할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조혼은

정략결혼 같이 부모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이의 인권이 침해되었으며 여성 할례 또한 피술자 여성의 성 기능, 신체 건강 등을 비가역적으로 훼손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 등의 악행들이 남아서 이어진다면 어린 아이들의 인권,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명예살인의 경우 살인이라는 것에 비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은 약하기에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은 명예 살인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그렇기에 신앙심, 집안의 명예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이 적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술자료

- 설병수. (2016). 에티오피아의 조혼 관습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42, 69-106.
- 권수현. (2004). 도덕규범의 보편성과 다원성의 문제. *철학연구*, 92, 1-29.
- 서상현. (2010). 아프리카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27), 59-84.
- 임병필. (2019). 명예살인과 이슬람의 상관성 및 사례 분석. *중동연구*, 38(2), 27-52.
- 문경희. (2011). 명예살인을 둘러싼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51(2), 135-159, 10.14731/kjir.2011.06.51.2.135
- 김중관. (2010).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2), 27-62.